

문서번호	기획예산과-3671
결재일자	2016.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65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지현	김건희	정광희	고재풍	김경호	03/18 김기동
협 조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기 획 경 제 국

(기 획 예 산 과)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구민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심의회를 개최함

I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32조의10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2016년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구청장 방침 제23호)

II

개최개요

- 일 시 : 2016. 3. 31.(목) 14:00
- 장 소 : 기획상황실
- 심의위원 : 총14명(위촉직 11명, 당연직 3명)
- 예 산 액 : 303,397천원(15개사업)
- 신청현황 : 56개단체 / 335,364천원
- 안 건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일괄공모사업 심의
 - 단체 및 사업 적정성 검토, 단체별 지방보조금 지원금액 배분 등
 - 2016년 마을공동체사업 자체심사 결과 심의

Ⅲ

추진 현황

□ 지원사업공모 공고 : 2016. 2. 11.(목)

- 공모방법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모사업 : 총무과 『민간협력사업 지원』 등 15개 사업 일괄공고
※ 『2016. 마을공동체사업』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공모 및 심사

□ 사업계획서 접수 : 2016. 2. 11.(목) ~ 2. 29.(월)

- 총 56개 단체 접수
 - 2015. 지원단체 중 미신청 : 2개단체
 -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광진구지부(자치행정과)
 - 아차산고구려역사진흥회(문화체육과)

□ 소관부서별 타당성 검토 및 조정 : 2016. 3. 2. ~ 3. 7.

- 단체의 적격성 및 추진사업의 적합성 검토
- 신청사업에 대한 적정 보조금 지원액 조정 등
※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공모사업단위로 소관 부서별 편성
- 일괄공모대상 보조금 현황
 - 예산편성액 : 303,397천원(전년대비 : ▲132,603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등 지정사업 제외
 - 지원액(부서조정액) : 288,827천원(전년대비 : ▲104,368천원)

구 분	보조금 증감(2015년 대비)			
	증 액	동 결	감 액	제 외*
단 체 수	4	41	11	6
금액(천원)	1,315	-	▲14,885	▲90,798

* 지정사업으로서 공모사업에서 제외된 단체 및 2016년 미신청 단체

○ 부서별 보조금 조정 현황

연번	소관부서	사업명	보조사업 신청단체	보 조 금		
				예산액	신청액	부서검토액
합 계			56	303,397	335,364	288,827
1	총무과	부서합계	3	8,550	11,770	8,550
		민간협력사업 지원	3	8,550	11,770	8,550
2	자치행정과	부서합계	13	141,842	149,552	131,272
		국민운동단체 사업	7	119,982	124,732	109,412
		한강수중 정화사업	2(중복)	3,270	5,520	3,270
		청소년보호 및 활동진흥사업	3(중복)	9,090	9,800	9,090
		효행장려사업	2(중복)	5,700	5,700	5,700
		통일교육지원사업	1	3,800	3,800	3,800
7	문화체육과	부서합계	21	69,135	70,085	65,135
		문화예술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20	63,585	63,585	63,585
		역사문화 활성화 사업	1	5,550	6,500	1,550
9	교육지원과	부서합계	1	2,000	2,000	2,000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1	2,000	2,000	2,000
10	복지정책과	부서합계	1	2,000	2,000	2,000
		저소득 주민 문화행사 지원	1	2,000	2,000	2,000
11	사회복지과	부서합계	9	38,960	51,277	38,960
		장애인관련 사업 지원	8	32,460	44,777	32,460
		어르신대상 프로그램 운영	1	6,500	6,500	6,500
13	가정복지과	부서합계	4	11,360	17,250	11,360
		청소년 보호사업 지원	4	11,360	17,250	11,360
14	환경과	부서합계	2	9,700	9,700	9,700
		환경관련 사업 지원	2	9,700	9,700	9,700
15	교통행정과	부서합계	2	19,850	21,730	19,850
		교통봉사단체 보조금 지원	2	19,850	21,730	19,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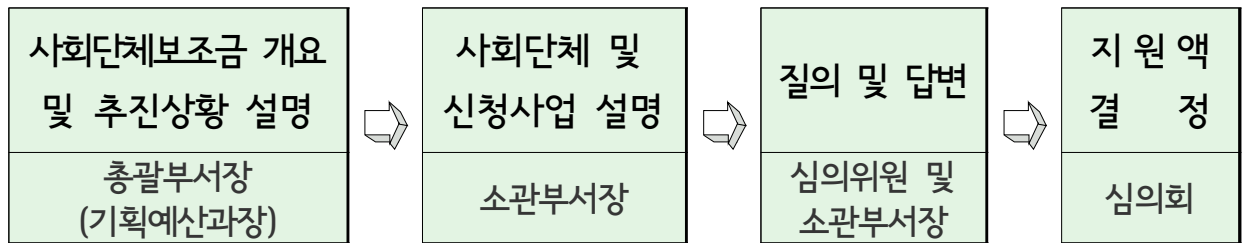
IV

일괄 공모사업 심의

□ 심사방법

- 1차(소관부서)
 - 전년도 지원 보조사업 평가 후 신청사업 검토 및 단체별 지원액 조정
- 2차(심의위원회)
 -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심의 후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심사절차



□ 지원사업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등

【보조금 심사 제외 사업】

- ① 응모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②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③ 특정시설이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④ 책자 발간 및 장학금 지급, 재산 증식 위주사업
- ⑤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⑥ 국·시·비 또는 구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 ⑦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결정된 사업
- ⑧ 사업대상지역이 광진구 이외의 사업 등

□ 심사방법

○ 소관부서 자체심사

▶ 실무소위원회, 제안자 참여심사 (1차심사)

- 심사일시 : 2016. 2. 22. ~ 23.
- 심사방법 : 사업별 대표제안자와 심사위원(4명) 참여, 제안자별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후 제안자 투표
- 심사기준 : 제안주체의 의지·준비정도, 주민참여 정도, 사업적합성 사업실현성(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 광진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사업심사 및 심사기준 결정

- 심사일시 : 2016. 3. 4.(금)
- 심사방법 :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천순위 및 심사 의견서를 검토하여 사업선정 범위 등을 정한 후 순위별 사업 선정(36건/44,640천원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부서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심의

□ 심사 시 고려사항

-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는 심사제외대상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 조례에 의해 자체 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침에도 법령의 위임이 없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경유함

→ 마을공동체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

※ 행정자치부의 질의·답변 사항

(질의)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 따로 마을공동체위원회(조례명시)를 두고 현장확인, 심의절차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음. 이런 경우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답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1호에서 규정한 법령의 명시적 위임없이 단순히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라면, 심의 절차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다만, 해당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중인 다른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서면심의도 가능)

VI

심의위원 구성

□ 심의위원 현황 : 총14명

- 위 원 장 : 오세경(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위 원 : 14명(위촉직 : 11 / 당연직 : 3) - 명단 별첨
 - 당연직 : 기획경제국장(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 위촉직 : 법률·문화·경제·학계·시민단체 등 11명

VII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694천원

○ 산출내역

- 보조금 심의자료 : 22,000원 × 27권 = 594,000원
- 심의위원 참석수당 : 100,000원 × 11명 = 1,100,000원

○ 예산과목

- (정책)성과중심의 혁신적인 구정운영 (단위)성과중심의 예산운영
(세부사업)효율적 재정운영 관리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예산교부 : 4월 중

- 심의확정 후 소관부서에 결정내역 통보 (기획예산과)
-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소관부서)
- 결정내용에 따른 사업계획 및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교부 (소관부서)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4.13.) 이후 교부를 원칙으로 함

따로붙임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위원 명단 1부. 끝.